

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생명문 비상구 안전점검하세요



비상구 폐쇄



물건 적치



도어스토퍼 설치



도어클로저 훼손

금지

비상구 = 생명문

EXIT



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

비상구 등 피난·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합니다.

✓ 비상구 신고 포상제 대상

다중이용업소, 판매, 운수, 숙박, 의료, 근린생활, 노유자, 문화집회, 위락시설

부적합 신고사례

- 신고대상 처종이 아니에요!
 -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등), 업무시설(오피스텔 등)
 - ※ 신고대상 제외 처종의 위반행위는 관할소방서에 일반민원으로 신청
-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돼요!
- 옥상 출입문이 피난·방화시설이 아닌경우, 위반행위 신고대상이 아니에요!
- 계단 출입문이 모두 방화문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에요!
 - (특별)피난계단의 기본요건 :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
 - 층별 방화구획의 기본요건 : 연면적 1,000m² 이상

※ 소방시설 등 고장을 미끼로 공갈·협박, 포상금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 허위신고 발견시
119 또는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